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4 . .
발 의 자	손홍섭의원 외 5명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손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8. 4.

발 의 자 : 손홍섭 · 박세진 · 안장환 · 윤종호
정근수 · 정하영 의원(6인)

1. 제안이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운영 원칙을 수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나.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 · 운영(안 제7조)

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안 제8조 ~ 제11조)

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 운영(안 제12조 ~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통·리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회사원·상인·학생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시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마을별 주민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 주거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
5.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및 사업공모 등)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업무부서에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소관업무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으면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의 지급방법·절차·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신청 또는 공모 사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性別)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국장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3.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

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 조례안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8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사항으로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
-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500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100,000원×15명×1회	1,500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기본) + 30,000원(2시간이상 초과)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지역공동체계 박 정 윤 (054-480-6232)